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23,109,655	18,693,290
일반회계		606,040,211	18, 181, 206
특별회계		17,069,444	512,083
	기타특별회계	17,069,444	512,083
	의료보호특별회계	2,521,478	75,644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869,695	26,091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5,953,718	178,612
	주택 사업 특별 회계	822,485	24,67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843,068	115,292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특별회계	3,059,000	91,770

- 제 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496,749천원으로 한다.
-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제 5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처리 한다.